제291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

심의일자: 2024. 1. 4.[서면심의]

□ 안 건 명 : 신내4공공주택지구 송수관로 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

위 안건에 대한 제291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,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붙임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「조건부채택」을 의결함

【주요 심의내용】

- 보정계수 b. 공사성격은 신설공사가 아닌 이설공사로 1.2로 반영함이 타당함
- 시공 후 단계 중 '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'에 1개월(사실상 1개월) 적용이 적정한지 세부일정 검토 필요
- ○「설계·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」제6조에 의거 시공후 단계에 대한 공제료는 제외하여 산출할 것
- 과업내용에 안전·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내용 추가 검토

붙임: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

○ 안 건 명: 신내4공공주택지구 송수관로 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

| 항 목 | | 검 토 의 견 |
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|
| 사업특성명가 | 공사특성 | 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 이견 없음 |
| | 공사수행방식 | 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 이견 없음 |
| | 사업여건 | 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 이견 없음 |
| 사업관리방식 검토 | | 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 이견 없음 |
| 배치인력 산출 적정성 | | 적정(), 조건부 적정(○), 부적정() ○ 건설사업관리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현황표에서 1. 공통업무 1) 연번 2. ~업무수행계획서 작성 → ~업무수행계획서 작성·운영 2) 연번 3, 4, 6, 7. 1)의 적용수량 1 → 0 (수량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필요) 2. 구매조달 1) 연번 1.의 적용수량 1 → 0 (수량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필요) 3. 시공단계 1) 연번 14. 하도급 타당성 검토 → 하도급 적정성 검토 4. 시공후단계 1) 연번 3: 적용수량 1 → 0 5. 보정계수 1) b. 공사성격 1.0 → 1.2 (신설공사가 아니고 이설공사로 1.2가 타당할 것으로 보임) |
| | 기 타 | 0 |
| 종 | 합 심의의견 | 적정(), 조건부 적정(○), 부적정() |

2023년 12월 15일

○ 안 건 명: 신내4공공주택지구 송수관로 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시업관리계획 심의

| 항 목 | | 검 토 의 견 |
|----------------|--------|--|
| 사업특성평가 집 | 공사특성 | 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○), 부적정(○) ○ 특이사항 없음 |
| | 공사수행방식 | 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 특이사항 없음 |
| 적정성 | 사업여건 | 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 특이사항 없음 |
| 사업관리방식 검토 | | 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 특이사항 없음 |
| 배치인력 산출 적정성 | | 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○), 부적정(○) ○ 투입인원수 소수점 자리수 1자리로 통일(붙임서류2) |
| 기타 | | ○ 중대한 재해(시공중 사망 1인이상 또는 3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또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으로 변경→ 과업내용서41p |
| 종합 심의의견 | | 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○), 부적정(○) ※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 |

2023년 12월 1년 심의위원 :

○ 안 건 명: 신내4공공주택지구 송수관로 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

| 항 목 | | 검 토 의 견 |
|----------------|--------|--|
| 사업특성평가적정성 | 공사특성 | 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 공종난이도를 「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」 별표 2 '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'에 따라 10점으로 적정하게 산정 ○ 공사난이도는 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 별표 2 '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기준'의 '시설물 분류 중 1종에 해당하는 공사로 15점으로 적정하게 산정 |
| | 공사수행방식 | 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 별표 2 '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기준'의 공사수행 방식에 해 당하지 않는 기타 공사로 10점으로 산정 |
| | 사업여건 | 적정(), 조건부 적정(○), 부적정() ○ 유사사업 경험 - 발주시점에서 가용인력을 재확인 적용 |
| 사업관리방식 검토 | | 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○), 부적정() ○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에 의한 사업특성 평가 및 발주청의 역향 평가 점수가 86점으로 점 80점이상에 해당하여 시공단계에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 업관리 가능하나 발주시점에서 발주청 역량을 재확인 적용 |
| 배치인력 산출 적정성 | | 적정(), 조건부 적정(○), 부적정() ○ 시공 후 단계 중 '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'에 1개월(사실상 1개월) 적용이 적정한지 세부일정 검토 필요 ○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선정 대상 시설물이 광역 상수관로일 경우 배치인력 산출 대상인지 검토(광역 상수관로의 관리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임) |

| 항 목 | 검 토 의 견 |
|---------|--|
| 기 타 | (과업내용서) ○ 용어수정 - 건설사업관리기술자 → 건설사업관리기술인 - 건설사업관리용역사 →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○ 용어통일 - 우리공사, 발주청 ○ 과업내용에 안전·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내용추가 검토 -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의 안전·보건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·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의 인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·보건 관계법령(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)을 준수하여야 함 ·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용역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협성평가를 실시하고, 위험성평가결과 중대한 유해·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함 ·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작업을 재개하여야 함 ·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용역수행 중 유해·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작업증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증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,합리적일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하여야함 ·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·보건관계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함 |
| 종합 심의의견 | 조건부 적정(○) |

2023년 12월 15일

○ 안 건 명: 신내4공공주택지구 송수관로 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시업관리계획 심의

| 항 목 | | 검 토 의 견 |
|----------------|--------|--|
| 사업특성평가 적정성 | 공사특성 | 적정(√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 관경이 D2400mm로 보통 기준(D400mm이상)에 부합 |
| | 공사수행방식 | 적정(√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 공사비 및 기존 사례와 비교하여 요건 충족함. |
| | 사업여건 | 적정(), 조건부 적정(√), 부적정() ○ 사업규모, 민원특성은 부합하며 도심지 민원 특성상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수 있음 |
| 사업관리방식 검토 | | 적정(√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 전문화된 인력의 활용으로 과업의 요건에 부합함. |
| 배치인력 산출 적정성 | | 적정(), 조건부 적정(√), 부적정() ○ 직접경비(주재비) 요율이 세부내역 15%, 갑지 10%로 서로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함. |
| 기 타 | | ○ 공사기간 24개월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6개월로 도심지 지장물 사전조사 및 준공 업무 처리를 위한 준비, 정리 기간의 추가 반영을 검토함이 필요함. |
| 종합 심의의견 | | 적정(), 조건부 적정(√), 부적정() ※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 |

2023년 12월 15일

○ 안 건 명: 신내4공공주택지구 송수관로 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시업관리계획 심의

| 항 목 | | 검 토 의 견 |
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|
| 사업특성평가 | 공사특성 | 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 공종분류 상 적용이 적정함 |
| | 공사수행방식 | 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 지방계약법에 따른 기타 공사임에 적정함 |
| 적정성 | 사업여건 | 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등 사업여건 적정함 |
| 사업관리방식 검토 | | 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방식 적용 |
| 배치인력 산출 적정성 | | 적정(○), 조건부 적정(), 부적정() ○ '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'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되었음 |
| 용역비의 적정성 | | 적정(), 조건부 적정(○), 부적정() ○ 용역비 조정 : 3,573.1백만원 → 3,546.4백만원(감 26.7백만원) ○ 공사연장 3km미만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차량운영비미적용 대상임 ○ 「설계·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」제6조에 의거 시공후 단계에 대한 공제료는 제외하여 산출할 것※ 재해·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과업은 '안전관리비'를 포함하여 발주할 것 |
| 기타 | | ○ "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"을 준수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업무 시행 철저 ○ 공사규모, 공사기간, 총공사비 등 주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8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변경 필요 |
| 종합 심의의견 | | 적정(), 조건부 적정(○), 부적정() |

2023년 1월 일